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2-18호

「상주시 체육진흥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8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1. 개정이유

가. 2022년 2월 3일 일부개정된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2022년 8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나.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현재 ‘지원할 수 있다’로 규정된 것을 ‘지원하여야 한다’로 의무화 (안 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24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shjgoods@korea.kr
- 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